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
직제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총괄과장이 분장하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는 예방치유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. 9. ~ 1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부과”를 “산정·부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획총괄과) ① (생 략)	제4조(기획총괄과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사행산업사업자별 중독예방 치유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 항</u>	<삭 제>
8. · 9. (생 략)	8. · 9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예방치유과) ① (생 략)	제5조(예방치유과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예방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<u>부과</u> · 징수 ·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	2. ----- <u>산정</u> <u>· 부과</u> ----- -----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2